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

의안 번호	46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11.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장원석)

가. 제안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자필요성

- 최근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하고,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민관협력전략을 추진중에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창업기업 정책수요 조사 결과,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수요가 높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큰 융자보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함.

- 투자받은 기업(943개)의 고용은 3만 7,081명으로, 투자 전년(2000년)대비 9,924명이 증가하였고, 기업 당 고용은 39.3명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4.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는 등 벤처투자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구 소재 벤처기업 수는 `21년 8월 기준 2,207개로 서울시 최다 수준이나 융자 중심의 현재 지원 정책만으로는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장 단계별 전략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출자개요

- 출자대상 : 강남창업펀드
- 출자규모 : 1,000,000천원(총 펀드규모는 민간자금 결성액에 따라 확정)
- 운용기간 : 8년(2022년~2029년)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벤처기업
- 출자조건

▸ '강남' 이라는 명칭 조합명 또는 펀드명칭에 사용

▸ 우리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 up)을 위한 의무투자비율(500% 이상) 유지 등

▸ 기술개발, 일반 운영자금 사용 원칙, 비업무용 부동산 및 채무상환 등에는 사용금지

다.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 예산조치 : 2022년도 본예산 편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기업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1]이며「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2]에 따라 투자계정에서 강남창업펀드제2호(가칭)에 1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1년 10억원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남창업펀드(1호)와는 별개의 다른 펀드임. 서울시, 경기도 등 이미 펀드를 조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융자중심의 지원정책에서 투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바 창업기업 초기단계에서 융자중심의 자금조달방법을 펀드를 통한 출자중심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혁신성장 분야 벤처기업들이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이 큰 융자보다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출자방식을 선호하고,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춘 투자가 용이하며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정부·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 출자규모를 조정하여 벤처기업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펀드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만큼,

○ 펀드의 운용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유한책임조합원[3]으로 구성된 "출자조합"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3) **유한책임조합원 중 특별조합원은 정부모태펀드 등이며,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필요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음.**

약정액 내에서 자금(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을 조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방식임.

○ 강남창업펀드 제2호 출자규모는 10억원, 운용기간은 8년,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우리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 출자조건으로 강남이라는 지역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우리구 소재기업의 스케일업(scale up)을 위한 의무투자비율(500%) 유지로 제한하여 기존 펀드(200%)보다 우리구 소재 기업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운용사 선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4]에 따른 출자로 인한 권리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끝.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461

제출년월일 : 2021. 10.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일자리정책과

1. 제안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필요성

○ 최근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하고,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민관협력전략을 추진[5] 중에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창업기업 정책수요 조사 결과,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수요가 높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큰 융자보다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6]함.

---

5)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중소벤처기업부, 2021.8.26.
6)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8.4.18.

○ 투자받은 기업(943개)의 고용은 3만 7,081명으로, 투자 전년(2000년)대비 9,924명이 증가하였고, 기업 당 고용은 39.3명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4.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7]를 보이는 등 벤처투자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구 소재 벤처기업 수는 '21년 8월 기준 2,207개[8]로 서울시 최다 수준이나 융자 중심의 현재 지원 정책만으로는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장 단계별 전략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나. 출자개요

○ 출자대상 : 강남창업펀드

○ 출자규모 : 1,000,000천원(총 펀드규모는 민간자금 결성액에 따라 확정)

○ 운용기간 : 8년(2022년~2029년)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출자조건

- '강남'이라는 명칭을 조합명 또는 펀드명칭에 사용.
- 우리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 · 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 up)을 위한 의무투자비율(500% 이상) 유지 등
- 기술개발, 일반 운영자금 사용 원칙, 비업무용 부동산 및 채무 상환 등에는 사용금지

---

7)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1.8.19.
8)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2020.9.2.

3. 참고자료

가. 관련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관 련 법 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협력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4.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